

"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제도" 주요 내용

2016. 6.

금융감독원

I 개요

1. 순보유잔고의 개념	1
2. 순보유잔고와 공매도의 관계	3
3. 순보유잔고의 계산 단위	4
<참고 1> 공시 및 보고의무 이행 절차	5

II 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제도

1.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

1) 의무 이행자	7
2) 의무 발생 기준	8
3) 공시 내용	9
4) 공시기한 및 주기	10
5) 공시 장소	11
<참고 1> 공시 및 보고의무 이행 절차	12
<참고 2> 독립거래단위 운용시 순보유잔고 계산	13
<참고 3> 자산운용사의 순보유잔고 계산	14
<참고 4> 투자일임·신탁재산 등의 순보유잔고의 계산	15

2. 순보유잔고 보고 제도

1) 의무 이행자	16
2) 의무 발생 기준	17
3) 보고 내용	19
4) 보고기한 및 주기	20
5) 보고 장소	21
6) 보고 절차	21
<참고 1> 공시의무와 보고의무의 연계	22
<참고 2> 독립거래단위 운용시 순보유잔고 계산	24
<참고 3> 자산운용사의 순보유잔고 계산	25
<참고 4> 투자일임·신탁재산 등의 순보유잔고의 계산	25

Ⅲ 개인 투자자 및 증권사 유의사항 등

1. 개인투자자	26
2. 증권사	28
3. 전산장애시 보고요령	31

I. 순보유잔고

1 개념

- 순보유잔고는 ①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에서 ② 미상환 차입 증권 등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증권의 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의미
 - 순보유잔고가 0 보다 큰 경우를 순매수잔고, 0 보다 작은 경우를 순매도잔고로 구분

$$\left. \begin{array}{l}
 \text{순보유잔고} \\
 \text{순보유잔고} > 0 \\
 \text{순보유잔고} < 0
 \end{array} \right\} = \begin{array}{l}
 \text{순포지션 (net position)} \\
 \text{순매수잔고} = \text{순매수포지션 (net long position)} \\
 \text{순매도잔고} = \text{순매도포지션 (net short position)}
 \end{array}$$

- 「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」의 범위

- i) 정의에 관계 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
 - * 다만 금융기관 등과의 일임/신탁계약 등을 통해 위탁자 본인은 형식적인 매매의사 결정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탁자 입장에서 동 수량은 제외
- ii) 대차계약 등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대여중인 수량
 - * 이미 소유하고 있는 수량 이상 매도주문시 초과수량에 상응하는 수량만큼 상환(리콜) 조치 필요
- iii)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계약·일임계약 등에 의거, 해당 증권의 매매 의사 결정을 본인이 하는 경우 그 수량
 - * 자문형립/신탁 등 고객이 수동적인 지위에서 형식적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할 뿐, 일임/신탁업자 등이 투자판단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일임업자/신탁업자 등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

☞ iii)은 각 계약별(펀드는 각 펀드별)로 순보유잔고 수량을 계산

□ 「지급해야 할 증권의 수량」의 범위

- i) 대차거래, 신용대주 계약에 따라 증권을 차입을 하였으나 **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수량**
- ii) 기타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**인도의무가 있는 수량**

□ 따라서, 순보유잔고는 「**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**」 (=자산)에서 「**지급해야 할 증권의 수량**」 (=부채)를 차감한 수량이므로 순자산 (net asset)과 동일한 개념*

*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[09.5]에서 기 제시

Asset (보유)	소 유 (보관증권)	Liability 미상환 차입증권 등
	미소유 (대여증권)	Net Asset = Equity 순자산 (순보유잔고)

- 순보유잔고가 음수(-)인 경우를 순매도포지션, 즉 공매도 포지션으로 지칭

2 순보유잔고와 공매도의 관계

□ 공매도는 주문시점에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만큼의 순보유잔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(보유관점*)로 판단

순매수포지션인 상태 (자산>부채)		순매도포지션인 상태 (자산<부채)	
[자산A]=Σ매수	[부채L]=Σ매도	[자산A]	[부채L]
[순자산E] Net Long Position		[순자산E] Net Short Position	

* 한편, 매매측면에서 순보유잔고는 장내외거래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노출되는 모든 거래(유상증자, 상속/증여 등)의 누적매수량에서 누적매도량을 차감한 값으로 보유관점에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

- 순매수포지션을 초과하여 매도주문을 하거나 순매도포지션인 상태에서 제출하는 매도주문이 공매도에 해당

□ 예시

거래	매매관점			보유관점 (거래후기준)			비고	공매도여부
	거래전 순포지션	포지션 증감	거래후 순포지션	보유잔고 (자산A)	차입잔고 (부채L)	순포지션 (순자산E)		
매수100	0	+100	100	100	0	100	A 100 E 100	
차입20	100	0	100	120	20	100	A 120 L 20 E 100	
매도20	100	-20	80	100	20	80	A 100 L 20 E 80	일반매도
매도100	80	-100	△20	0	20	△20	A 0 L 20 E △20	일반매도80 공매도20

3 순보유잔고의 계산 단위

- (원칙) 순보유잔고 계산은 매도자(법적실체, Firm-wide)별로 포지션을 합산(netting)하여 산출
 - 따라서 특정법인(개인)이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일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합산하여 순보유잔고를 계산
- (예외)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*에 한해, 독립성 요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 독립거래단위** 운영이 가능하며
 - * 은행, 증권, 보험, 자산운용, 외국금융투자업자
 - ** 법인 조직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로서 일정요건(구체적인 매매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조직일 것, 매매시점마다 자체적으로 순보유잔고를 산정가능 할 것, 운영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 등)을 갖추어야 하며, 기존 가이드라인('09.5.4)에서 제시된 합산단위와 동일한 개념
 - 공매도 여부는 독립거래단위별로 순보유잔고를 산출하여 판단 가능하나, 순보유잔고 보고는 법인전체의 순보유잔고를 모두 합산*하여 법인 명의로 보고 (p.13 참고)
 - * 자산운용사의 펀드 등 제외 (공시:p 14~15, 보고:p 24~25 참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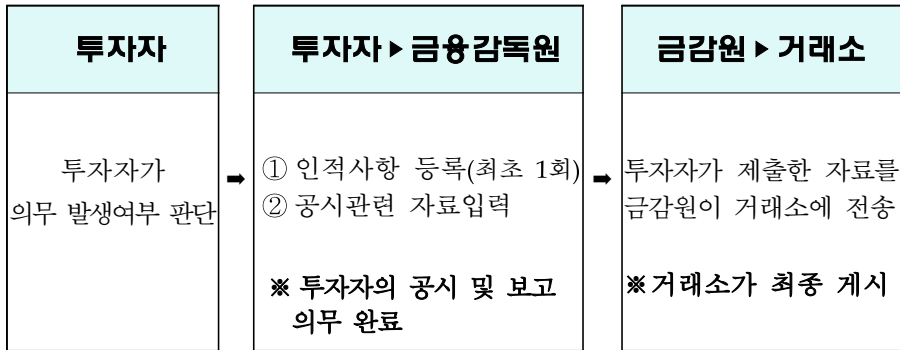
참고 1 순 보유잔고 계산 기준일

- ※ (분모) 순 보유잔고 비율 계산시 분모는 항상 상장주식수를 사용
 - 장내매매 : 매매 체결일
 - 장외취득/처분 : 계약 체결일
 - CB/BW 권리행사, 유무상증자, 주식배당으로 **취득시** : 상장일(T일) 이전 2영업일
 - T-2일에 취득 수량을 순보유잔고(분자)에 가산. 단, 유상증자 미청약, 타인의 CB/BW행사 등 본인의 순보유잔고(분자)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유상증자/CB행사 등으로 인한 변동후 발행주식의 상장일 기준으로 순보유잔고를 계산
 - * 주주배정증자(I) : 기존 -100주 보유, 발행주식수 10,000주, 증자수량 100주, ⇒ 증자로 인한 취득수량 20주 (배정기준일에는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가정)
 - 3자배정증자(II) : 기존 -100주 보유, 발행주식수 10,000주, 증자수량 100주 ⇒ 3자배정 수량중 20주 취득
 - (I), (II) 사례 계산방식
- | | 순보유잔고(분자) | 상장주식수(분모) | 순보유잔고비율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증자전 | -100주 | 10,000 | -1.000% | |
| 증자후 | -80주 | 10,000 | -0.80% | T-2일에 계산 |
- EB 권리행사시 : 교환청구일
 - 주식 ↔ ETF : 설정시 설정신청일, 환매시 환매청구일
 - 감자 : 변경상장일
 - DR ↔ 원주 : DR을 원주 전환시 취득확정일, 원주를 DR 전환시 전환청구일

II. 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제도

◆ (개요) 순보유 잔고 공시 및 보고 의무는 상장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, 즉 순매도잔고 상태면서 보고 또는 공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발생

□ (투자자의 의무)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하여 한국거래소가 게시



□ (미이행시 과태료) 공시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(자본시장법 §449)

1 공매도 잔고 공시

- 1 (의무 이행자)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공매도하여 공매도 잔고가 일정 비율 이상인 투자자
- 대리인을 통한 공시도 가능하나, 이 경우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의무 위반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

※ (대상주식)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 종목이며,

- (포함) 보통주, 우선주 및 원주를 직접 상장한 외국주식, 리츠 / 인프라투융자회사 / 스펙 / 선박투자회사 / 증권투자회사 등
- (제외) ETF/ELW 및 개별주식 선물/옵션, KDR 등

□ (미이행시 과태료) 공시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(자본시장법 §449)

② (의무발생 기준) 순보유 잔고 대비 당해 종목의 상장주식* 총수가 0.5% 이상(공매도를 하면 순보유잔고는 음수이므로 정확한 표현은 $\Delta 0.5\%$)

* (현행) 발행 주식수 → (변경) 상장 주식수[개정 시행령 208조의2의④]

○ 즉,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종목별 상장주식 수 대비 '순보유 잔고 비율'이 $\Delta 0.5\%$ 이상($\Delta 0.6\%$, $\Delta 0.7\%$ 등)

* 상장주식수*에 대한 일별 '순 보유잔고 비율'이 음수(-)로서 그 절대 값이 0.5% 이상

○ 의무발생 여부는 매 영업일 24시를 기준으로 판단

※ (상장주식수 데이터) 거래소 홈페이지 > 시장정보 > 주식 > 상장현황

<http://marketdata.krx.co.kr/mdl#document=040601>

< 예시 : 순보유잔고 비율 계산 >

◇ 상장주식인 종목 A의 상장주식 총수*가 10,000,000주라면,

* 한국 거래소 홈페이지 참조

● 보고기준 비율이 $\Delta 0.5\%$ 이므로

● 보고기준 수량은 $10,000,000\text{주} * \Delta 0.5\% = \Delta 50,000\text{주}$

③ (공시내용) 주식 종목별 '순보유잔고 비율'이 0.5% 이상인 투자자의 성명·주소·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시

○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: 종목명, 종목코드, 시장구분(유가증권, 코스닥)

○ 보고자에 관한 사항 : 성명, 주소, 국적, 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,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), 주소, 연락처 등

○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: 순 보유잔고가 $\Delta 0.5\%$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,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('최초의무 발생일')

○ 보고의무발생일, 순보유잔고 수량·비율, 상장주식 총수

※ 공시파일 제출 양식(엑셀파일)

: 민원·신고 > 자본시장 보고 > 공매도 잔고보고(또는 바탕화면 바로 가기)에서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

< 공시 양식 >

종목코드	보고의무 발생일	최초의무 발생일	순보유잔고 수량	상장주식 총수	순보유잔고 비율

※ 공시의 편의를 위해 자료제출시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나 보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금융감독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함

④ (공시기한 및 주기) '순보유 잔고 비율'이 0.5% 이상에 도달한 날 (공시의무 발생일)로부터 3영업일* 장 종료(시간외 포함) 후 지체 없이

* (예) '16.7.4.(月) 순보유 잔고 비율 0.5% 도달시, '16.7.7.(木) 장 종료 후 지체 없이

○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'순보유 잔고 비율'이 0.5%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

○ 중간에 보고기준 비율 밑으로 하락하였다가, 다시 보고기준에 부합하면 '최초 의무 발생일'도 다시 기산됨(예시 참조)

< 예시 : 순보유 잔고 공시 >

일자	순보유잔고 비율(%)	의무여부	보고의무 발생일	최초의무 발생일	
7. 4.(월)	△0.431	△0.5% 미만	의무 없음	-	-
7. 5.(화)	△0.520	△0.5% 이상	최초 공시	7. 5.(화)	7. 5.(화)
7. 6.(수)	△0.521	추가 거래 없으나 △0.5% 이상 유지	계속 공시	7. 6.(수)	7. 5.(화)
7. 7.(목)	△0.323	△0.5% 미만	의무 없음	-	-
7. 8.(금)	△0.619	△0.5% 이상	최초 공시	7. 8.(금)	7. 8.(금)
7.11.(월)	△0.628	△0.5% 이상	계속 공시	7.11.(월)	7. 8.(금)
7.12.(화)	△0.517	△0.5% 이상	계속 공시	7.12.(화)	7. 8.(금)

① 7.4. 의무 발생건에 대하여, 7.7. 장마감 후 까지(T+3 영업일) 공시

② 7.5. 의무 발생건에 대하여, 7.8. 장마감 후 까지(T+3 영업일) 공시

③ 7.6. 의무 발생건에 대하여, 7.11. 장마감 후 까지(T+3 영업일) 공시

➡ 7.6.에 7.4. / 7.5 / 7.6. 의무발생일 내용을 일괄 보고 가능

⑤ (공시장소)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(투자자 → 금감원 → 거래소)

○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하여 한국거래소가 게시

※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> 민원·신고 > 자본시장보고 > 공매도 보고

➡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면 공시의무 이행 완료

민원·신고

- 민원신청
- 인허가
- 등록·신고
- 정보공개
- 상속인조회
- 불법금융신고센터
- 자본시장보고
- 장내파생상품보고
- 공매도포지션보고
- 이용안내
- 보고서제출
- 보고서조회/정정보고
- 보고자관리

이용안내

이용안내
보고서제출
보고서조회/정정보고
보고자관리
비밀번호관리

●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개요
 상세내용은 화면 아래 첨부파일 ▶ '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안내' 파일 참조

* (개요)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속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 (공매도 잔고)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.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2(공시) 및 208조의3 (보고)]

※ 순보유 잔고란? 종속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량에서 차입(신용대주 등)한 수량 등을 차감한 값(순보유잔고)이 음수 (-)인 상태를 의미하며 공매도 잔고와 음(-)의 순보유 잔고는 같은 뜻입니다.

보고서 등록 >

	공매도 잔고 보고	공매도 잔고 공시
근거 조항	· 자본시장법 §180조의2 · 동법 시행령 §208조의2	· 자본시장법 §180조의3 · 동법 시행령 §208조의3
	* 상장주식*에 대한 공매도 잔고 비율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자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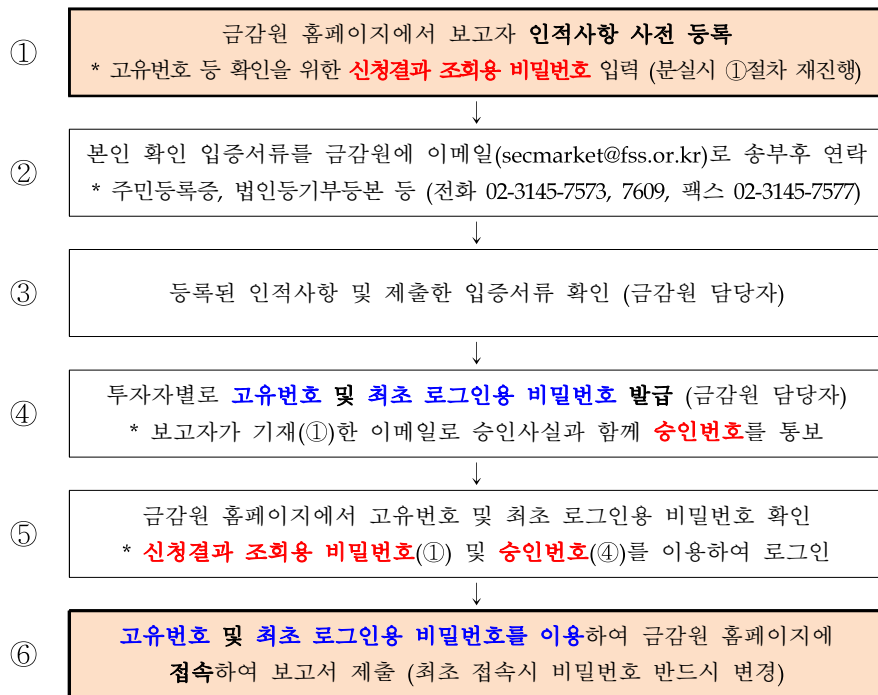
참고 1 공시 및 보고의무 이행 절차

- 사전 인적사항 등록절차를 거쳐 **고유번호*** 및 **최초 로그인용 비밀번호****를 발급받은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**보고서 제출**

* 보고서 제출을 위한 로그인시 사용하는 ID (변경불가)

** 최초 보고서 제출을 위한 로그인시 사용하며, 최초 접속후에는 반드시 변경해야 함

< 인적사항 등록 및 보고서 제출 절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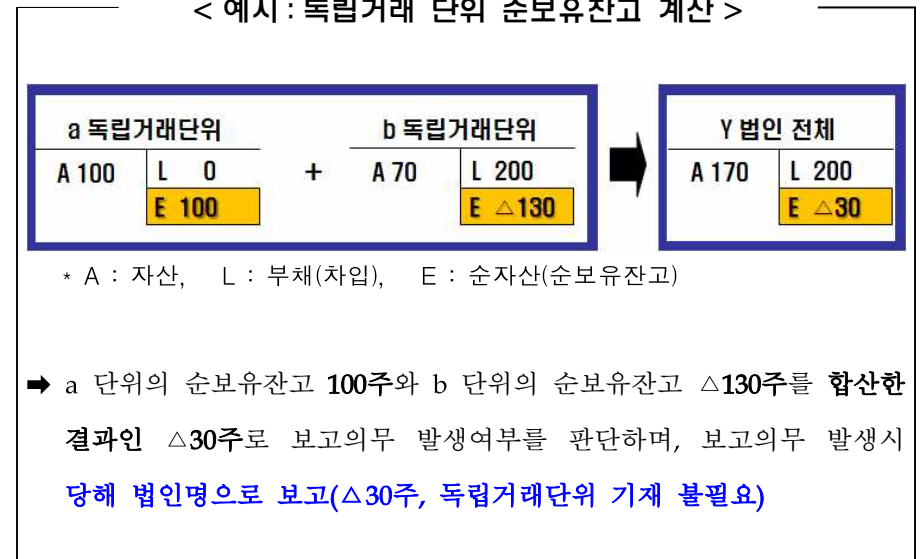


- * 관련 홈페이지 메뉴 ① 보고자 관리 → 보고자 등록 신청
④ 보고자 관리 → 신청결과 조회
⑥ 보고서 제출

참고 2 독립거래단위 운용시 순보유잔고 계산 (국내외)

- 동일한 법인내 독립거래단위가 다수인 경우 모든 독립거래단위의 순보유잔고를 **합산(firm-wide netting)**하여 기준비율 해당여부를 판단
- (예시) Y법인이 a, b 두 개의 독립거래 단위를 운영하는 경우

< 예시 : 독립거래 단위 순보유잔고 계산 >



참고 3 자산운용사의 순 보유잔고 계산

□ 자산운용사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

- 각 펀드별*로 순보유잔고를 계산한 후, 순보유잔고 수량을 합산하여 자산운용사가 보고

* 펀드의 법적형식은 구분하지 않음

< 예시 : 6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>

◇ (Δ)와 (+) 순 보유 잔고를 보유하는 펀드를 모두 합산

	펀드 1	펀드 2	펀드 3	펀드 4	펀드 5
Δ0.127%	Δ0.008%	Δ0.7%	Δ0.02%	+0.6%	+0.001%
공시대상X	→ 보고 및 공시기준 여부판단 없이 (+), (-)잔고를 전부 합산한 결과 공시기준인 Δ0.5% 미만이므로 공시하지 않음				

	펀드 1	펀드 2	펀드 3	펀드 4	펀드 6
Δ0.907%	Δ0.008%	Δ0.7%	Δ0.8%	+0.6%	+0.001%
공시대상O	→ 보고 및 공시기준 여부판단 없이 (+), (-)잔고를 전부 합산한 결과 공시기준인 Δ0.5% 이상이므로 공시대상				

참고 4 투자일임 / 신탁재산 등의 순보유잔고의 계산

□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계약·일임계약 등*에 의거 해당 증권에 대한 매매의사 결정을 금융기관이 하는 경우, 그 수량은 금융기관 보유분으로 간주

* 신탁, 랩어카운트, 투자일임계약, 펀드 등

- 즉, 고객이 수동적인 지위에서 형식적으로만 투자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투자의사결정 주체인 당해 금융기관*이 순 보유 잔고를 계산

* 고객은 자신의 순 보유 잔고 계산 대상에서 동 주식을 제외

- 한편 고객이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매 건별로 특정하여 지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당해 고객이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의 순보유 잔고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, 고객의 순보유잔고로 계산

※ 스왑계약 등으로 인하여 증권사 등이 헤지를 위한 공매도를 하는 경우, 증권사 등이 보고 및 공시 의무 이행자

□ 금융회사는 재산별 공시기준 해당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산별 순 보유잔고를 합산하여 금융회사 명의로 보고

< 예시 : 일임재산 등 보유시 순 보유잔고의 계산 >

	독립거래 단위 1 100	독립거래 단위 2 Δ130	일임재산 +10	일임재산 Δ20	신탁재산 Δ40
	고유재산 Δ30(100+Δ130)				
증권사 A Δ80	고유재산 Δ30(100+Δ130)		일임재산 +10	일임재산 Δ20	신탁재산 Δ40
증권사 B Δ10	고유재산 20		일임재산 Δ30	-	-
자산운용사 C Δ45	고유재산 Δ20		-	펀드 1 Δ15	펀드 2 Δ10
은행 D Δ50	고유재산 Δ60		-	-	신탁재산 10

* 일임, 신탁 등의 투자의사결정은 금융기관이 하는 것으로 가정

2 순보유잔고 보고

※ 순보유잔고 보고제도는 상기 공시제도와 '의무자', '대상증권'은 동일하나

- 보고의무 기준, 보고양식 등이 상이하며, 일임 /신탁 /펀드재산 등이 있는 경우 순보유잔고 계산 방법도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

① (의무 이행자)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공매도 잔고가 일정기준에 (17p) 해당하는 투자자

- 대리인을 통한보고도 가능하나, 이 경우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의무 위반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

- ※ (대상주식)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 종목이며,
- (포함) 보통주, 우선주 및 원주를 직접 상장한 외국주식, 리츠 / 인프라투융자회사 / 스팩 / 선박투자회사 / 증권투자회사 등
 - (제외) ETF/ELW 및 개별주식 선물/옵션, KDR 등

□ (미이행시 과태료) 공시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(자본시장법 §449)

② (의무발생 기준) 상장주식* 종목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, 즉, 순매도 잔고 상태로서 아래의 ① 또는 ②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(최초)보고의무가 발생

* (현행) 발행 주식수 → (변경) 상장 주식수 [개정 시행령 208조의2의④]

① 순보유잔고 대비 당해 종목의 상장주식 총수 비율(이하 '순보유잔고 비율')이 $\Delta 0.01\%$ 이하($\Delta 0.02\%$, $\Delta 0.03\%$ 등)이면서, 순보유잔고 평가금액(수량*가격)이 1억원 이상인 경우

➔ 공매도 잔고 0.01% 이상 & 공매도 잔고 평가액 1억원 이상

②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, '순보유잔고 비율'과 무관하게 보고의무 발생

➔ 공매도 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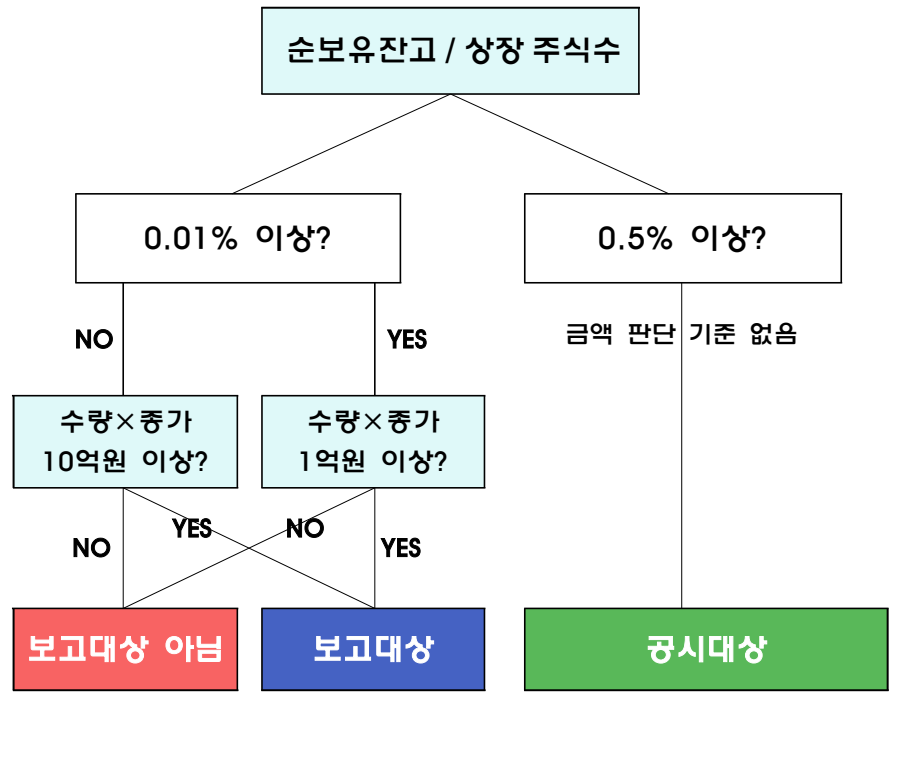
- 최초 보고 후 추가 거래가 없더라도 ① 또는 ②의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, 매 영업일마다 계속 보고의무 발생

□ 보고의무 여부는 매 영업일 자정(24시, '기준시점')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

- 장중 일시적으로 보고기준(순보유잔고 비율과 평가액)에 해당하여도 기준시점에서 보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고의무 없음

<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 판단 >

◇ 매 영업일마다 주식 종목별로 보고 및 공시 해당여부를 판단



③ (보고내용) 보고대상 주식, 보고자, 순보유 잔고

○ 보고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

- 종목명, 종목코드, 시장구분(유가증권, 코스닥)

○ 보고자에 관한 사항

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,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), 주소, 연락처 등

○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

- 보고의무발생일, 순보유잔고수량, 상장주식총수, 순보유잔고비율

※ 보고파일 제출 양식(엑셀파일)

: 민원·신고 > 자본시장 보고 > 공매도 잔고보고(또는 바탕화면 바로 가기)에서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

<보고 양식 >

종목코드	보고의무 발생일	순보유잔고 수량	상장주식 총수	순보유잔고 비율

※ 보고 편의를 위해 자료제출시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나 보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금융감독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함

④ (보고기한* 및 주기) '순보유잔고 비율' 및 평가액이 17페이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날('보고의무 발생일')로부터 3영업일** 오전 9시 까지

* (예) '16.7.4.(月) 보고의무 발생시, '16.7.7.(木) 오전 9시 까지

** 영업일 산정에서 제외되는 날 : 보고의무발생일 당일, 공휴일, 근로자의 날, 토요일

-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'순보유 잔고 비율'이 0.5%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

< 예시 : 순보유 잔고 보고 >

일자	잔고 비율(%)	평가액	보고 의무 (사유)	보고의무 발생일
7. 4.(월)	△0.009	1.5억원	X (△0.01% 미만)	-
7. 5.(화)	△0.011	0.9억원	X (△1억원 미만)	-
7. 6.(수)	△0.02	2.0억원	O (△0.01% & 1억원 이상)	7. 6.(수)
7. 7.(목)	△0.51	43억원	O (△0.01% & 1억원 이상) * 공시의무도 발생	7. 7.(목)
7. 8.(금)	△0.009	11억원	O (10억원 이상)	7. 8.(금)

- ① 7.6. 의무 발생건에 대하여, 7.11. 오전 9시 까지(T+3 영업일) 보고
 - ① 7.7. 의무 발생건에 대하여, 7.12. 오전 9시 까지(T+3 영업일) 보고
 - ② 7.8. 의무 발생건에 대하여, 7.13. 오전 9시 까지(T+3 영업일) 보고
- ➔ 7.11.에 7.6. / 7.7 / 7.8. 의무발생일 내용을 일괄 보고 가능

⑤ (보고장소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www.fss.or.kr)

-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자료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한국 거래소에 자료를 전송

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면 공시의무 이행 완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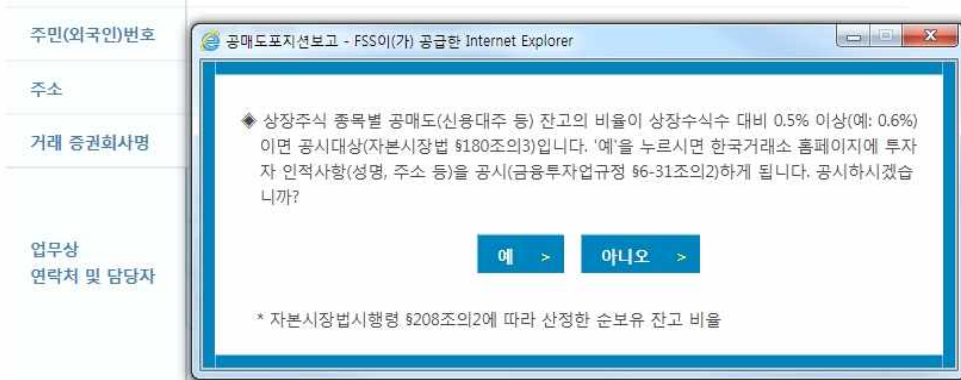
⑥ (보고 절차) 공시와 동일(p12 참조)

참고 1 공시의무와 보고의무의 연계

- * 세부내용은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고, ② 전화(3145-7573, 7609),
③ 거래 증권사로도 문의 가능

□ (각각 이행) 보고의무와 공시의무는 **법상 별개의 의무**이므로 두 가지 의무에 모두 해당될 경우 **각각 이행**하여야 함

- ① (개인투자자) 대부분 투자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개인투자자는 '보고' 후, 공시대상에 해당할 경우, **자동으로 공시의사를 확인** 하고, 동의할 경우 즉시 '공시'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구성



※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, 반드시 '보고자수정'에서 담당자에 관한 정보를 수정한 후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. [바로가기]

3.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?

선택	보고의무발생일	순보유잔고수량(주)	보고 또는 공시의무 발생일 현재 대상주식의 상장총수(주)	순보유잔고비율(%)	공시대상
<input type="checkbox"/>	20160606	-100,000	10,000,000	-1.000	

제출 > 취소 >

- ② (기관투자자) 주로 엑셀파일*을 제출하는 기관 투자자는 **공시용 파일과 보고용 파일을 각각 제출(총 2개)** 하여야 함

* 엑셀양식은 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로그인 하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

- ➔ 즉, 공시 대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**보고용, 공시용 2개의 파일을 제출**

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

[자본시장법시행령 제208조의2(보고) 및 제208조의3(공시)]

금융위원회 귀중 한국거래소 귀중	보고일 : 보고자 :
* CSV 보고서 형식 첨부파일 다운	(보고용)report(korean)_report.csv (공시용)report(korean)_disclosure.csv (보고용)report(english)_report.csv (공시용)report(english)_disclosure.csv
* 순보유잔고 보고서 제출 (보고용) (위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작성하여 업로드)	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찾아보기..."/>
* 순보유잔고 보고서 제출 (공시용) (위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작성하여 업로드)	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찾아보기..."/>

- 투자자가 공매도 공시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ID를 발급 받고(최초 1회), 의무 발생시마다 발급받은 ID로 로그인하여 공매도 투자현황을 제출

- ① (인적사항 등록: 최초 1회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ID 발급을 신청하고 신분증 사본을 금감원 이메일(secmarket@fss.or.kr)로 전송

* 민원·신고 > 자본시장 보고 > 공매도 포지션보고(또는 바탕화면 바로 가기)

- ② (로그인 ID 등 수령) 투자자가 ①의 인적사항 등록시 입력한 투자자의 이메일로 로그인 ID와 비밀번호가 전송

- ③ (보고·공시자료 제출) 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(거래당일 제외, 영업일 기준) **오전 9시까지**(보고) 또는 **장종료 직후**(공시) 발급받은 ID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화면 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

참고 1 독립 거래단위 운용시 순보유잔고 계산 (국내외)

□ 공시제도와 동일(p.13 참조)

참고 2 자산운용사의 순보유 잔고 계산 (국내)

□ 자산운용사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,

- 각 펀드별로 순보유 잔고를 계산 한 후, (-) 순보유잔고를 보유한 펀드를 모두 합산하여 보고기준(비율 및 평가액) 해당하는 경우 자산운용사가 보고

* 펀드의 법적형식은 구분하지 않음

※ 공시제도에서는 (-)와 (+)잔고를 모두 합산하였으나, 보고제도 하에서는 음의 순보유잔고만 합산함에 유의

< 예시 : 4개의 펀드*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>

◆ 기준비율에 관계없이 (-) 순보유잔고를 보유한 펀드를 모두 합산

자산운용사	펀드 1	펀드 2	펀드 3	펀드4
	△0.015%	△0.02%	△0.008%	+0.3%
△0.043%	→ △0.01% 도달여부 관계 없이 (△)순보유잔고를 가지는 재산은 모두 포함			(+)잔고이므로 제외

참고 3 투자일임 / 신탁재산 등의 순보유잔고의 계산

□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계약·일임계약 등*에 의거 해당 증권에 대한 매매의사 결정을 금융기관이 하는 경우 금융기관 보유분으로 간주

* 신탁, 랩어카운트, 투자일임계약, 펀드 등

- 즉, 고객이 수동적인 지위에서 형식적으로만 투자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투자의사결정 주체인 당해 금융기관*이 순보유 잔고를 계산

* 고객은 순보유 잔고 계산 대상에서 동 주식을 제외

- 한편 고객이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매 건별로 특정하여 지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당해 고객이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의 순보유 잔고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, 고객의 순보유잔고로 계산

※ 스왑계약 등으로 인하여 증권사 등이 헤지를 위한 공매도를 하는 경우, 증권사 등이 보고 및 공시를 이행

□ 금융기관은 음의 순보유 잔고를 가지는 재산들을 모두 합산(양의 순보유잔고는 감안하지 않음)

< 예시 : 일임재산 등 보유시 순보유잔고의 계산 >

증권사 A △90	독립거래 단위 1 100	독립거래 단위 2 △130	일임재산 +10	일임재산 △20	신탁재산 △40
	고유재산 △30(100+△130)				
증권사 B △30	고유재산 20		일임재산 △30	-	-
자산운용사 C △45	고유재산 △20		-	펀드 1 △15	펀드 2 △10
은행 D △60	고유재산 △60		-	-	신탁재산 10

* 일임, 신탁 등의 투자의사결정은 금융기관이 하는 것으로 가정

Ⅲ. 개인 투자자 및 증권사 유의사항 등

1 개인 투자자

- 신용거래대주 및 대차거래 차입을 통해 증권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개인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동일하게 적용
-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동일한 종목을 거래시 증권사와 관계없이 종목별로 순보유수량을 모두 합산하여 보고의무 발생여부 판단

< 예시 : 개인의 다양한 주식거래에 따른 순보유 잔고 계산 >

◇ 甲이 △△전자 주식을 거래

- A증권사에서 신용거래대주를 통해 1,000주 매도
- B증권사에서 대차거래서비스를 통해 300주를 차입하여 이중 100주 매도
- C증권사에 400주의 잔고 보유
- 자신의 개인 금고에 200주 실물 보관

		1,000주 신용대주시				신용대주 주식 매도	
A 증권사	자산 1,000	부채 1,000	→	자산 0	부채 1,000		
	순자산 0 (=1,000-1,000)			순자산 -1,000 (=0-1,000)			
		300주 차입후				100주 매도	
B 증권사	자산 300	부채 300	→	자산 200	부채 300		
	순자산 0 (=300-300)			순자산 -100 (=200-300)			
		보유주식				보유주식	
C 증권사	자산 400	부채 0	금고 보관	자산 200	부채 0		
	순자산 400			순자산 200			

甲의 순보유잔고는 △1,000(A증권사) + △100(B증권사)
+ 400(C증권사) + 200(금고보관) = △500주

□ (권고사항) 개인은 순보유잔고 산출 방식에 의한 공시 및 보고의무 발생여부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

- 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차차입매도 거래를 하는 경우 가급적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*하여 매매·보유정보를 집중한후 증권사의 도움을 받아 공시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

* 증권사는 타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나 실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거래내역을 알 수 없어, 여러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특정 증권사에서 순보유잔고를 일괄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

2 증권사

1 개인고객에 대한 안내 철저

- 신용거래대주 또는 개인이 차입자가 되는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는 개인도 순보유잔고 공시 및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사전에 안내할 필요
- 보고 및 공시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인투자자들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공시 및 보고제도에 대하여 안내 철저

< 예시 : 증권사 조치 필요사항 >

- ① 홈페이지, HTS, MTS 및 영업점 교육 등을 통해 공매도(신용대주) 투자자들에게 보고·공시 의무,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
- ② 매도 당일에는 평가액이 1억원(또는 10억원) 미만이라도 주가 변동으로 1억원(또는 10억원) 초과시 문자 및 팝업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고의무가 통지되도록 증권사 시스템 개선(주문시, 주문후)
- ③ 각 영업점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보고 및 공시 매뉴얼 전파 등 영업점 직원 교육 등

※ 개인 외 기관 등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대해 철저히 안내할 필요

2 매도주문 수탁시 내부통제체제 구축 관련

- 증권사는 고객의 매도 주문의 적정성*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함

- * 무차입공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차입공매도 또는 일반(기타)매도주문으로 호가표시, 차입공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(기타)매도주문으로 호가표시 등
- 증권사와 위탁자간에 본·지점 및 계열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*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절차를 갖추고 순보유잔고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도주문의 적정성을 확인
- *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순보유잔고 정보를 제공받아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국내 대리인(증권사) 포함
- 증권사와 위탁자간에 특수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주기적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매도주문의 일부를 선별하여 위탁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성을 확인

※ 내부통제체제 구축 관련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

- ▶ 이상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
- ▶ 계열투자자 또는 대형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정기점검
- ▶ 기타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샘플링 점검

- (예시) ▶ 당해 증권사가 대차중개한 종목에 대한 일반매도 주문
▶ 통상적인 거래규모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반매도 주문
▶ 매도호가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DMA 주문
▶ 요구하는 체결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공격적 매도를 요구하는 경우
▶ 공매도가 포함된 매도주문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 매수 없이 일반매도 주문이 발행하는 경우 (특히 투자자가 당해 증권사에게 대부분의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) 등

